

[재]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(충청남도대전학생기숙사) 입사생 선발 및 관리 규정 개정 안내

(재)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서는 충청남도대전학생기숙사(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)의 입사생 선발 및 관리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.

2018년 1월 3일

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이사장

1 제11조(입사제한)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다.
 1. 전염병 질환 보균자
 2. 대학에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 3. 휴학기간 중인 자
 4. (삭제 2016. 11. 04.)
 5.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자
 6. (삭제 2016. 11. 04.)
 7. 학사생으로 재사 중 퇴사조치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8. 기타 재단에서 정한 사생수칙에 경고처분(별점 20점)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자(신설 2017. 12. 20.)

2 입사비 및 부담금의 징수

- 입사비 6만원은 최초 부담금 납부 시 징수하며, 징수된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(개정 2017. 12. 20.)
- 부담금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숙사 운영기간에 대하여 1개월 기준으로 16만원으로 한다. 단,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30일 기준 일할계산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.(개정 2015. 12. 23, 2017. 12. 20.)

- 입사생의 등록 및 퇴사·퇴실에 관한 환불 규정은 (별표 2)를 따른다.
(개정 2017. 12. 20.)

<별표 2>

입사생의 등록 및 퇴사·퇴실에 관한 환불 규정

[등록 취소 및 퇴사의 경우]

구 분	기 간	환 불 액	비 고
등록 후 취소	7일 이내	납부액의 80% 환불	신입사생, 재사생 공통 적용
	7일 초과	납부액의 70% 환불	
학기 중 퇴사	-	당월분을 제외한 잔여월의 70% 환불	재사생 적용
학기 중 강제 퇴사		환불 없음	사생수칙 위반 (제18조 퇴사처분)

※ 단, 군입대, 취업, 불의의 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퇴사할 경우,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당월분을 제외한 잔여월의 100%를 환불한다.

[일시퇴실의 경우]

구 분	기 간	환 불 액	비 고
학기 중 퇴실	7일 이내	환불 없음	
	7일 초과	퇴실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% 환불	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

※ 예시) 전공실습, 병원치료, 교육 연수 등

[방학운영 기간 중 퇴사·퇴실(등록 취소)의 경우]

구 분	기 간	환 불 액	비 고
등록 후 퇴사·퇴실 (등록취소)	7일 이내	납부액의 80%	
	7일 초과	환불 없음	

※ 방학 중 퇴사·퇴실의 경우 부담금 일체 반환 없음